



## 대 구 지 방 법 원

### 판 결

사 건 2023고정1210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A  
검 사 이상민(기소), 송현석(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정우(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윤희상  
판 결 선 고 2024. 9. 12.

###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 유

####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8. 12. 28. 'B'라는 상호로 울산 남구 C건물, D호에 소재지를 두고 대  
부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대부업법이 규정하는 제한 이율인 연 24%를 초과하는



이자를 교부 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9. 12. 26. 부산 진구 E에 있는, (주)F 사무실 내에서 거래 상대방인 피해자 G(여, 40세)에게 수수료 3,500,000원 및 선이자 4,500,000원을 공제한 42,000,000원을 대부하면서 60,500,000원을 상환하도록 약정하여 연 214%의 이자를 수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3. 17. 위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수수료 4,900,000원 및 선이자 5,000,000원을 공제한 60,100,000원<sup>1)</sup>을 대부하면서 76,900,000원을 상환하도록 약정하여 연 123%의 이자를 수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부업법에서 정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취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1. H협회 수사협조의뢰회신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항 제3호, 제8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1) 공소장 기재 61,000,000원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한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금원을 대여할 당시 계좌이체한 금액 이외에 현금으로 지급한 금액이 있으므로 이를 합산하여 계산할 경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이자율을 초과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거래할 때 줄곧 계좌이체의 방식으로 거래하여 왔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 역시 현금으로 거래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판사      박성인 \_\_\_\_\_



## 대 구 지 방 법 원

### 제 4 형 사 부

### 판 결

|         |                  |                               |
|---------|------------------|-------------------------------|
| 사 건     | 2024노3703        |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
| 피 고 인   | A                |                               |
| 항 소 인   | 피고인              |                               |
| 검 사     | 이상민(기소), 김지우(공판) |                               |
| 변 호 인   | 법무법인 정우          |                               |
|         | 담당변호사 윤희상        |                               |
| 원 심 판 결 | 대구지방법원           | 2024. 9. 12. 선고 2023고정1210 판결 |
| 판 결 선 고 | 2025. 8. 13.     |                               |

###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 이 유

####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양형부당)

##### 가. 사실오인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계좌로 송



금한 외에 추가적으로 2,0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하여 총 7,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대여 당일 8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은 수수료와 선이자가 아니라, 대여 당일 대여금 7,000만 원에 대한 원리금을 상환 받은 것에 불과하다.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7,000만 원을 계좌로 송금한 외에 추가적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하여 합계 9,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대여 당일 99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은 수수료와 선이자가 아니라, 대여 당일 9,000만 원에 대한 원리금을 상환 받은 것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와 거래할 때 줄곧 계좌이체의 방식으로 거래하여 왔던 점, 피해자 역시 현금으로 거래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 나. 이 법원의 판단

##### 1) 관련 법리

항소심이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제1심의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고자 할 때에는,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예외적 사정도 없이 제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등 참조).

## 2) 구체적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범죄사실 제1항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계좌를 통해 2019. 12. 26. 5,000만 원을 계좌로 송금받으면서 같은 날 800만 원을 수수료와 선이자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다시 돌려주었고, 현금으로 2,000만 원을 따로 교부받은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고, 범죄사실 제2항 부분에 관하여 '2020. 3. 17. 7,000만 원을 계좌로 송금받으면서 같은 날 990만 원을 수수료와 선이자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다시 돌려주었고, 현금으로 2,000만 원을 따로 교부받은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②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금전을 대여하면서 현금으로 일부 금원을 지급하였음에도 대부계약서나 기타 서류에 현금을 지급한 부분에 대해 별도로 기재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대부업자로서 금전 대여를 전문적인 직업으로 하는 사람인 점, 피해자에 대한 금전 대여 역시 이와 같은 영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 사건 거래 전에는 알지 못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대여한 금원의 액수가 약 4,000만 원으로서 적지 않은 점, 피



해자가 대여금에 대한 담보 등을 제공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계약서 등에 현금 교부와 관련한 아무런 기재 없이 피해자에게 현금으로 약 4,000만 원에 이르는 금원을 빌려주었다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③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별도의 현금을 대여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피해자가 타 대부업체로부터 빌린 대부금을 상환하는 과정에서 타 대부업체의 요청으로 피해자에게 현금을 빌려주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타 대부업체의 요청으로 피해자에게 현금을 대여하게 된 것이라 하더라도,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위와 같은 현금 교부 사실을 계약서에 별도로 기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여전히 납득하기 어렵다. 더구나 피해자는 2019. 12. 26. 대여 당시 타 대부업체로부터 대부금을 빌린 사실을 피고인에게 고지하고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대여금으로 타 대부업체에 남은 대부금을 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피고인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낮다.

④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현금으로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원 부분은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율을 산정할 때 피고인이 대여 당일 지급받은 금원은 모두 이자에 해당하고(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모두 원본에 충당되는 이상(같은 법 제8조 제5항),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대여 당일 지급한 금원의 성격이 공제된 선이자의 교부인지 아니면 실제 대여금의 상환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법률에서 정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취하였다는 사실이 달라진다고 보기 어렵다.



### 3.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고,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채성호      \_\_\_\_\_

                 판사      권재호      \_\_\_\_\_

                 판사      안정현      \_\_\_\_\_